제9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4월 임시) 녹취록

회 의 명	제9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장소	'23. 4. 12.(수) 13:30~, 화상회의
참 석 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7), 심의안건 담당 과·계장
부의안건	위원회 보고 3건, 심의안건 2건

(위원회 개회)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포함하여 보고사항이 3건 있습니다. 각 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보고(3건)

- 1.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행정안전부 의견 제출
-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담당
- 2. '23년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시계획
- 자치경찰총괄과 청렴감사담당
- 3.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 최종 추진 계획
- 자치경찰정책과 여성청소년담당

위원장) 이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가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 보고에 대해 의문점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안계십니까

김주열 위원) 위원회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자치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온 이원화 모델을 통해 자치경찰이 체계화되었는데, 궁금한 점은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 지방 소속이었다가 신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등 경찰의 (이원화)안과 역행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위원장) 소방직의 경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자치 경찰은 반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시행될 수 있는지 김주열 위원님이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자치경찰에 대해 이미 출범된 상태에서는 완전 이원화가 되기 위하여 전국협의회에서 하나의 모델로 통일시켜서 행안부나 경찰청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있고, 그런 취지로 단일화 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중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고, 나중에 18개의 위원회에서다시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정도 이뤄질 것입니다.

김주열 위원) 위 이원화 안은 우리 자치위 내부에서 제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회에 제출되어 조정된 것인가요

위원장) 아직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은 아닙니다.

김진혁 위원) 김진혁 위원입니다.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경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가능하지만, 현재 국가 경찰사무가 자치경찰사무가 이원화된 체제에서 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적으로 정착이 먼저 되어야 이원화가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또 자치경찰청장은 자경위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 시피 시도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경찰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모습과 맞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과 상당히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위 안이 우리

위원회와 지향하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세부 내용은 수시로 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때, 위원 일동 의견이 없다,고 대답

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김진혁 위원이 수업 일정으로 인하여 퇴정을 요청하여 퇴정.(13:49경)

위원회 심의(2건)

(제21호) '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계획

- 자치경찰정책과 생활안전총괄담당

위원장) 안건 제21호 ['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회의자료 18쪽입니다.

안건 제21호, 「'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계획」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에서 시도자 치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하고 결과를 경 찰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 23명의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대해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 세부평가 지침」이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립되어 통보됨에 따라,「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23명의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수행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장 성과평가는 관서평가 90%와 책임지휘역량평가 10%로 구성됩니다. 경찰서 관서평가는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계획에서 설명드렸듯이 성과과제 평가 80%, 치안만족도 평가 10%, 인권수준향상도 평가 10%로 구성됩니다.

책임지휘 역량평가는 내외부 만족도 연계평가 40%, 경남도경찰청 위원회 평가 30%,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 30%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평가 목적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우수시책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경상남도 자치경찰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평가방향은 자치경찰 주요 시책에 대한 지역맞춤형, 주민체감형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경찰서별 상이한 여건 하 노력과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평가대상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23명입니다.

경찰서장별 성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단에서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단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분이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표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우수사례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개 분야별로 우수시책 1건 씩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노력도 30점, 창의성 20점, 효과성 30점, 확산가능성 20점입니다.

노력도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우수사례 달성을 위한 경찰서장의 노력도를, 창의성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기초한 타 경찰서와의 차별성을, 효과성은 구체적인 성과 확인 및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을, 확산가능성은 타 경찰서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배정 인원은 경찰청기준에 따라 S등급 20% 5명, A등급 40% 9명, B등급 30% 7명, C등급 10% 2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점기준을 올해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나, 기존 평가와의 일관성을 위해 배점간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점차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가계획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중으로 경남도경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11월에 각 경찰서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결과는 경찰청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우수사례 평가기준과 성과보고서 양식, 2022년과의 차이점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김주열 위원) 서장 평가 배점 기준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것인가요

자치정책과장) 네 기존 배점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김주열 위원) 그럼 변경도 가능한가요

자치정책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김주열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력도와 같은 정성평가 항목은 편차를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배점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치정책과장)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과 논의를 통해 배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수 위원) 질문있습니다. 경찰서장 평가는 경찰서 평가 후에 이뤄지는 지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거의 동시에 되는데, 경찰서가 경찰서장보다 먼저 평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수 위원) 지휘관의 역량이나 의자에 따라 경찰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서 평가에 따라 경찰서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경찰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경찰서장을 평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규정 위원) 고규정 위원입니다. 위 심의안건에 대해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재판 일정으로 인하여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고규정 위원이 재판 일정으로 인하여 퇴정을 요청하여 퇴정.(13:56경)

위원장) 정책과장님, 자치경찰서장 평가항목 중 노력도,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이 네가지는 이전에 경찰청에서 해오던 기준인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표 개발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의 결과,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연구위원들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안에 따라 위 네가지 지표가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무자치국에서 일방적으로 지표를 나누고 배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김주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편차가 날 수 있는 분야에 배점 가중치를 두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네 김주열 위원 께서 말씀하신 세부평가지표 항목 관련하여 재검토한다는 것과, 윤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관서 평가를 경찰서장 평가의 효과성에대해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하자는 안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이 안을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고 답변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계획은 두 가지에 대한 조건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두드림으로 가결 선포)

(제22호)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자율방범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고

- 자치경찰정책과 생활안전총괄담당

위원장) 안건 제22호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자율방범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고」 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회의자료 제27쪽, 안건 제22호,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자율방범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경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안전도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지표는 인구만명당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인구만명당 자율방범대원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경남도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와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 등을 자치경찰 사무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과 자율방범대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안전지수의 기준이 되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는 949개입니다. 인구만명당 안전지킴이집 수는 2.81개로 도부 6위수준이며, 2026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원 수는 8,727명이며, 인구 만명당 자율방범대원 수는 25,84명으로 도부 7위입니다. 2026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장은 O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자율방범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5월 17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정책과장) 대부분 학교 근처에 있는 문방구, 편의점, 약국을 활용하거나, 업주가 어린이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규학 위원) 학교 주변에 있고, 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곳이면 설치가 된다는 말이죠

자치경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열 위원) 우리 지역 안전지수가 4등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등 정도가 되는가요

위원장) 등급이 1~5등까지 있는데 실제 5등급인 곳이 없기 때문에 4등급이면 거의 하위라고 봐야 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체적인 순위로 보면 경남도가 7~8위 정도 됩니다.

김주열 위원) 그럼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가 거의 유사하게 분포를 이루고 있네요 나머지 등급 평가를 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교통 분야와 5대 범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네 설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건 제22호,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자율방범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때, 위원들 "없습니다." 답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두드림으로 가결 선포)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2023. 4. 24. 14:00에 개최하여 보고, 심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잘 조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월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